

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[별표 11] <개정 2010.12.13>

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
(제9조제3항 관련)

직무분야	중직무분야	국가기술자격의 종목
02. 경영·회계·사무	023. 사무	워드프로세서

※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상시검정 시 수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함.